

특성화사업추진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일 : 2001.04.13

개정일 : 2010.07.09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특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·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특성화 분야) 특성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.

1. 연세특성화분야

국내외 우수 대학교의 교육·연구 프로그램과의 비교우위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.

2. 유망분야

국내외 최고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선택을 통한 집중의 필요성이 높거나 일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말한다.

제 3 조 (연세특성화위원회) ① 본교 특성화사업 추진·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'연세특성화위원회'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특성화사업의 관리·운영·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교학부총장(위원장), 대학원장, 기획실장, 교무처장, 연구처장(간사), 연구처 연구정책부처장, 의과학연구처장, 원주연구부 연구정책부처장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각종 안건을 결정한다.

⑤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는 연구처 연구진흥팀에서 담당한다.

제 4 조 (특성화 분야 선정) 연세특성화분야 및 유망분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되며, 총장이 최종 선정한다.

제 5 조 (재원 및 지원금 배정) ① 각 연구단(사업단) 및 특성화 분야의 재원은 본교의 특성화 지원금, 교내외·연구비, 기금 및 기타로 충당한다.

② 특성화지원금을 위한 예산은 각 연구단(사업단)에 배정·운용한다.

제 6 조 (내규 및 시행세칙의 제정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, 각 연구단(사업단) 및 특성화 분야는 별도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 4 조 제 2 항, 제 4 항)은 200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 4 조 제 2 항, 제 5 조 제 2 항)은 200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(4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전면개정)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